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점검 지표안

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Disability/SDG-CRPD-Resource/IndicatorsPDF/article-19-indicators-en.pdf>

번역: 해외 탈시설 정책 스터디팀

- 도연(광주인권지기활짝),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윤성녀(부모연대 구로지회),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혜란(한국장애포럼), 차한선(국제전략센터), 최한별(한국장애포럼)

문의

- 최한별(한국장애포럼) kdf@thekdf.org / 02-6954-7418
- 이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footact0420@gmail.com / 02-794-0395

개정 버전

© 2020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관한 인권 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개발한 **SDG-CRPD** 리소스 패키지의 구성요소입니다. 이것은 **SDG-CRPD** 리소스 패키지의 고급 버전입니다. **OHCHR** 검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최종 버전이 발행됩니다.

CPRD에 대한 인권 지표는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OHCHR**에 있으며 반드시 유럽 연합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성 및 지표	자립생활 방식	지원서비스	주요 서비스의 접근성 및 대응성
구조	19.1 장애 및 필요한 지원 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자율성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를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장애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법제정.i 19.2 다양한 주거 선택지 및 지원 서비스 가용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timeframe) 설정,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진 종합적인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의 채택.ii 19.2.1 기준, 기간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 및 성인의 탈시설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의 채택.iii 19.2.2 장애인의 강제 시설 수용에 따른 신규 입소 금지. 19.2.3 장애아동 시설 신규 입소 금지(idem 23.8). 19.3 주택소유권(소유권, 공식 임대 계약, 비공식 합의 등)의 모든 형태에서 타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장애인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고 주택의 지속적인 제공과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 조항. 19.4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활환경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요건. 19.5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및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접근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표시자를 설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iv		19.12 모든 주요 서비스v (공공 행정 및 공공 시설 포함)가 통일된 국가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고 보장. 19.13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주류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접근성, 문화적 적합성 및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의 채택.vi

	19.6.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조항 없음.vii 19.7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의무적 접근성 기준 채택. 19.8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장하는 국내 전략 또는 계획의 수립. 이러한 주거 옵션에는 지역사회 전역에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개조 가능한 공간이 포함됨 .vii	19.9 "개인 주도/이용자 주도"의 인적 지원, ix 정신적 고통, 심리적 위기 및 기타 간헐적 또는 긴급한 필요에 맞춘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수당 및 서비스의 접근, 가용성 및 다양성을 개발하고 증가시킬 계획보조 장치와 기술 제공하는 국가 전략 또는 계획 수립.x 19.10 가정 지원, 동료 상담, 재정 지원 또는 장애인, 친척 및/또는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당을 포함한 지원 조치의 가용성. 19.11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가족 기반 대안 양육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족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정책 마련.xi	
--	--	--	--

속성 및 지표	자립생활 방식	지원서비스	주요 서비스의 접근성 및 대응성
과정	19.14 지역사회 내 공공/사회적 주택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역 분리통계.	주택을 제공받은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 장애, 거주지역 분리통계.	19.2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직원 교육, 특히 비차별과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제공에 관한 개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xii
	19.15 주택 정책과 시장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직원과 민간행위자 중 장애인의 권리와 이 권리의 관련 측면에 대해 훈련된 사람의 수와 비율.xiii	19.17 장애인 1,000명당 공인된 전문가를 포함한 가정 내, 주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일상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개인 지원(personal assistance),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심리사회적 위기상황에 따른 비공식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포함) 인증 유형 및 직업 유형에 따른 분리 통계.	19.25 주요 서비스 내의 접근성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할당된 예산.
	19.16 (그룹홈, 지적장애인 주택 등을 포함한 시설 등)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제약하는 기관의 연간 폐쇄 개수 및 비율-시설 유형 및 지역 분리 통계.xiv	19.18 탈시설 지원 프로그램(경제적 지원 포함)에 접근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와 비율. 19.19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지원하도록 훈련된 직원의 수와 비율. 19.20 신청가능한 지원 서비스 및 주택에 관한 정보 배포 등 일반 대중 및 장애인 가족/친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활동.	19.26 국가 접근성 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율.

	19.21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된 예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1인당 지출 금액과 비교한 1인당 평균 지출 금액. 19.22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협의 체계. xv 19.23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조사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접수율;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사례 비율; 후자의 사례 중 정부 또는 담당기관이 권고를 준수한 비율; 각 비율 모두 민원 접수 체계별 분리 통계 도출.	
--	---	--

속성 및 지표	자립생활 방식	지원서비스	주요 서비스의 접근성 및 대응성
결과	19.27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주택 보유 형태별 장애 성인 세대주의 수 및 비율.xvi 19.28 사회적 주택 거주자 수(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별 분리 통계). 19.29 현재 생활환경에서 자신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만족을 보고하는 성별, 연령 및 장애 유형별 장애 성인의 수와 비율.	19.30 개인 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수 및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지원 서비스별 분리 통계 19.31 자립 생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 지원 신청자 중 서비스 수급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19.35 전체 서비스 사용자 중 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 및 성별, 연령, 장애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된 비율.xviii 19.36 주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요청 수와 비율. 19.37 서비스 유형, 성별, 연령 및 장애별로 세분화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도.
	19.32 성별, 연령, 장애, 기관 및 시설 유형별로 분류된 현재 시설(예: 정신병동 입원 시설, 지적 장애인 거주지 등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 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 . 19.33 시설에 수용된 전체 장애인 중 시설(예: 정신 입원 환자, 지적 장애인을 위한 거주지 등)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취한 장애인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 19.34 탈시설 후 개인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수와 비율.		

부록

*CRPD 위원회, 제19조 16항에 대한 일반 논평 5번 참조: "(c) 자립적 주거 형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내 통합은 모두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 밖 생활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특정 건물이나 환경에서의 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생활 형태와 주거 형태로 인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도, 5~8명이 사는 작은 그룹홈도, 심지어는 혼자 사는 집도 시설 또는 시설화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립적 주거 형태로 볼 수 없다. 시설화된 환경은 그 규모□이름□형태가 제각각 다르지만, 타인과 개인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보조인을 선택할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 고립 및 분리되고, 일상의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며, 동거인을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과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활동을 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권위적이며, 주거 형태가 감독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환경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본질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시설 환경도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과 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택은 삶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며 시설의 분리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위해서는 시설 환경 폐쇄 이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크고 작은 아동 그룹홈은 특히 위험하다. 가족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 같은" 시설도 결국은 시설이며, 가족의 보살핌은 대체하지 못한다.

***"지원 서비스"는 목적, 설계 및/또는 결과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포함과 참여를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의 격리와 분리를 방지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예: 일상 생활에 대한 개인 지원,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 집 안팎의 서비스를 포함
- 고용, 교육, 정치, 문화 참여 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특별히 맞추어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고립과 격리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을 포함
- 각 주의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름, 유형 또는 종류가 다를 수 있음
- 일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아래 미주 ix 참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A/HRC/34/58 참조

*** "주류 서비스"의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CRPD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 및/또는 "일반 서비스(general services)"라고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영화관, 공원, 극장, 체육 시설"(CRPD 제19조에 대한 일반 논평 5번)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건강, 행정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보고 및/또는 모니터링에 이 속성에 따른 지표를 활용할 때, 접근성 표준을 채택하고 준수하기 위한 "일반 서비스" 전반의 계획과 조치의 존재 및 구현과 특정 경우에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 개인의 생활과 가족 생활과 모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ii 그러한 계획은 다음을 예측해야 한다.

- 다양한 장애인 인구의 접근성과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수용 의무에서 벗어난 주택의 가용성. 주택 선택권은 특정 지역사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소유, 임대, 공동 주택, 기타 형태의 주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개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요건을 충족함(지표 19.8 참조).
- 개인에 의해 설계되거나 또는 자유롭게 수용되어 개인의 요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지원(가정에서의 지원, 활동 참여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인 지원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지표 19.9 참조)

iii 탈시설은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취업 지원을 포함하여 과도기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탐색하고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은 시설화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개인에 민감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탈시설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기타 장애별 형태의 자유 박탈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된 모든 개인에 대한 구금 즉시 중단
-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의 과도기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 개발 또는 투자하는 것을 절대 금지
- 거주인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긴급한 조치를 제외하고 기존 시설의 개조 금지
- 시설 케어에서 지역사회 기반 케어로 예산 자원의 재분배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자원 할당

iv 여기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의 개발, 제공, 탈시설 과정 비용 등 할당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v "주류 서비스"에는 무엇보다도 공공행정(예: 지자체, 시민등록 등), 보건, 교육, 은행 등이 포함되며, "접근성 표준"은 접근성의 다양한 차원(구축된 환경, 교통, 정보, 통신)을 다루어야 한다.

vi 이러한 전략이나 계획은 다음을 고려하고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에 접근할 때 구축된 환경, 교통, 정보, 통신의 접근성, 그 중에서도 경사, 점자 표기, 읽기 쉬운 언어, 수화, 자막, 대안, 증강 통신 모드, 촉각 의사소통을 포함

- 주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vii 예를 들어, **CRPD 제12조**에 반하는 법적 능력의 제한 또는 거부, 정신 건강 상태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법률, 특정 치료의 준수에 따른 사회적 주택의 접근을 조건화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

viii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사회적 주택단위의 직접적 귀속
- 장애인이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출의 촉진, 활성화
-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간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세금 또는 기타 면제(예: 출입구, 복도, 생활공간 화장실 등의 개조)

ix 지원 서비스, 특히 개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통제

-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통제해야 한다(예: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고용주 역할을 하는 것; 자체 서비스 설계, 서비스 제공 업체 요청과 지시).
- 개인 지원인(**personal assistant**)은 개인 지원을 받은 개인에 의해 모집, 교육 및 감독되어야 한다.
- 개인 지원을 받은 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 없이 개인 지원인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 개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인의 통제 정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개인 지원에 대한 통제권은 지원되는 의사결정을 통해 행사될 수 있다.

자금할당/수당

- 개인 지원인 고용에 대한 자금 배분은 개인화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개인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필요성 평가, 양질의 고용을 위한 국가 입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 표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자격 기준은 의료 기준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 맞춤형 서비스로 인해 예산 절감 및/또는 개인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 기금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장애인에 의해 통제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 혜택은 장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수당 및 현금 이전 제도는 소득 부족으로 인한 소득 지원과 장애 관련 비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및 이전 가능성 분산(**Decentralisation of service provision and transferability**)

- 서비스 제공의 분산은 위에 열거된 기준의 품질이나 준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지원 수당 및 서비스는 주 및 지역 조직의 다른 지역 내에서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x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A/HRC/34/58항, 제14항, 보조기기 및 기술에 관한 자료표도 참조한다.

xi 정책은 명시적으로 어린이의 시설화를 끝내고 가족 보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 순위를 매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더 넓은 가족 내의 대체 돌봄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가족 기반 환경 내 친족 관계 및 위탁 가정 케어를 포함한 양질의 가족 기반 돌봄이다.

xii 훈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권 기반 장애 접근
- 대안적 의사소통 수단 및 방식을 포함한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

xiii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회적 주택 공공정책 입안자
- 부동산 중개인과 중개인을 대표하는 사무실, 연맹 또는 협회
- 세입자 협회
- 공증인 협회

xiv (어떤 종류의) 시설이 효과적으로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그곳에 시설화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이주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효과적인 폐쇄를 측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름 바꾸기"와 "재사용"(예: 특수교육을 위한 AA 기숙학교로 재지정되는 장애인 거주시설)를 식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xv 이 지표는 CRPD의 4.3조 및 CRPD 위원회의 제7호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문 회의, 전문적인 브리핑, 온라인 자문 조사, 입법 초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요구, 기타 참여 방법 등 공공 당국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검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반드시

- 협의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
-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을 보장
- 정보, 조건을 주지 않거나 장애인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음
- 등록된 조직과 등록되지 않은 조직을 모두 포함
- 초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

- 참가자의 관련 비용을 총당

xvi 특히 선택과 자원이 제한된 경우, 선택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는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개념은 장애인이 주거 시설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xvii 장애 및/또는 삶의 질 조사 또는 연구 내 자체 보고 평가는 선택 행사 범위에 대한 대리 표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 배치 및 독립성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xvii 이 지표는 다양한 주류 서비스(예: 정부 행정 서비스, 교육, 건강 등)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며 장애인에 대한 포괄성과 대응성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장애 사용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나이,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는 특정 서비스의 포괄적인 제공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 제도에 장애인의 등록률은 포함을 나타낸다. 단, 이는 범주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특정 목적이나 특성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예: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 사용자 중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